

미술 서비스업 (변경)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
			3일
신고인	성명(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합니다)	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
	주소		전화번호
신고내용	상호 또는 명칭(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말합니다)		전화번호
	주된 영업장의 소재지		
	세부 신고업종 []화랑업 []미술품 경매업 []미술품 자문업 []미술품 대여·판매업 []미술품 감정업 []미술 전시업		

※ 다음 사항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신고번호		신고 연월일	
변경사항	변경 전		
	변경 후		

「미술진흥법」 제18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[]신고 []변경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영업장(주된 영업장으로 한정합니다)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 3. 건물 등기사항증명서	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조례로 정한 금액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사업자 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신고 수리	→	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발급
신고인		처리기관 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)						